

#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도 안내

국민편익 제고 및 행정능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발급제도와 관 련하여, 발급절차와 조합업무처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#### 1. 제도취지

- 인감도장 제작 및 행정기관 신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되어 국민편익 제고 및 행정능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개선
- 인감도장 대신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,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발급

#### 2. 발급절차

- 민원인이 읍 · 면 · 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
- 전자 서명 입력기(전자패드)에 서명하고 용도 기재
-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

《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》

① 민원인이 읍 · 면 · 동 등 방문 → ②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(전자패드)에 서명 → ③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(읍 · 면 · 동장 등) →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

#### 3. 업무처리

-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영업 업무 시 개인인감증명서와 '본인서명사실 확인서'를 병행하여 사용
- '본인서명사실 확인서' 발급시 행정관청에서 용도란에 사용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"대한설비건 설공제조합 약정체결용" 또는 징구목적에 맞는 용도를 기재
-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'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'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업무 담당자는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받은 자의 발급번호, 성명 등을 통해 발급사실 확인 🧘

《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절차 》

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(최초 1회, 읍·면·동 등 방문) → ② 민원인이 민원24 접속 → ③ 공인인증서 등 으로 본인 확인 → ④ 확인서 작성 → ⑤ 전자서명 → ⑥ 확인서 발급 → ⑦ 발급증 출력 후 제출 → ⑧ 수요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

#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

구 분	인감증명서	(본인)서명사실확인서	전자(본인)서명확인서					
1) 사전 절차	o 인감등록 사전신고 -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 문·신고 ※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	o 사전신고 절차 없음	○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-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 문·신청 **공인인증서 등 인증수 단 사전 발급 필요					
2) 신청 주체	o 본인 또는 대리인	o 본인	o 본인					
3) 신청 방법	0 증명청 방문	o 발급기관 방문	o 전용사이트 접속					
4) 본인확인	o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	o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	o 온라인상 확인 - 발급비밀번호, 공인 인증 서 등					
5) 확인방법 (날인 및 서명)	o 인감날인	o 본인 자필서명	o 공인전자서명					
6) 서식	o 사용용도 : 부동산 매매 / 기타	o 사용용도 : 부동산(이전, 제한물권 설정, 기타)/ 부 동산 이외	o 사용용도 : 부동산(이전, 제한물권 설정, 기타)/ 부 동산 이외					
	o 수임인 : 미기재	o 수임인 : 성명, 주소 기재	o 수임인 : 성명, 주소 기재					
7) 관인	o 증명청(읍면동장,시군구청 장) 날인	o발급기관 (읍면동장,시군 구청장) 날인	o 미날인					
8) 발급	o 증명청이 발급	o 발급기관이 발급	o 본인이 직접 발급					
9) 발급 형태	o 문서형태로 발급	0 문서형태로 발급	o 전자문서로 발급 (시스템내 저장)					
10) 제출 방법	o 인감증명서 제출	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	o 발급증 제출					
11) 수요기관의 확인방법	o 인영비교 확인 ※ 발급사실 확인 가능	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※ 발급사실 확인 가능	o 온라인상 확인					
12) 시행일	o 1914. 7. 7	o 2012, 12, 1	o 2013, 8, 2					

#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



#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

- 1. 사전절차		1
민원인	승인권자	수요기관
① 민원인 본인이 승인권자(읍·면·동 등) 발급기관 직접 방문		
②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 작성과 신분 증 제출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 등록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(외국인). - 국내거소신고자 : 국내신고거소증+여권 (PR)		
공인인증서 발급         I           (기 발급자 해당없음)         I           · 공인인증기관, 등록대행기관 방문신청         I           · 기존 발급 범용, 은행거래용         I           공인인증서 사용         I	③ <b>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</b> -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한 확인	1 1 1 1 1 1
	④ 이용승인 - 발급시스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부여 -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 주소지에 승인 관련공문 이송	
		!   
2. 말급실자		1
5) 민원24 접속 - ID, PW 입력       I         6)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      I         신분확인       I         -공인증서 암호입력       I         -읍·면·동 등에서 부여받은 비밀번호 입       I         력 및 수정       I         -보안토큰, 휴대폰 인증, PC 등 추가 신분       I		1 1 1 1 1 1 1 1
⑦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작성     □       - 사용용도, 거래상대방 등 작성     □       -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    □		1 1 1 1
<ul> <li>8 전자서명</li> <li>-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전자서명하여 확인</li> </ul>		   
<ul> <li>9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</li> <li>발급일자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</li> </ul>		I I I
◎ <b>발급증 출력</b>		     
- 3 확용적차		1
V. EO E''I		①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         ①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         스유지관은 민원인의 발급번         속, 제출받은 민원인의 발급번         호, 성명 등을 통해 발급 확인





# 공사이행보증 안내

#### (1)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으로만 거래가능

공사이행보증은 한도거래용채무약정서와는 별도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여야만 거래가 가 능합니다. 이 경우 조합직원 입회하에 연대보증인이 자필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.

#### (2) 보증금액

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하되, 입찰유의서 등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합니 다. 다만,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 여야 합니다.

O 보증인수 거부제도 시행

 -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69%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 다만, 보증금액 이상의 물적담보를 제공하거나, 해당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〈물적담보 제공시 〉

- 1. 낙찰률이 69% 미만 66% 이상인 경우 : 차액의 100%
- 2. 낙찰률이 66% 미만 63% 이상인 경우 : 차액의 150%
- 3. 낙찰률이 63% 미만 60% 이상인 경우 : 차액의 200%
  - ※ 특별심사 결과 담보를 징구하는 경우 위와 비교하여 담보가액이 큰 금액 징구
- 낙찰률이 60% 미만인 공사는 위와 관계없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
#### (3) 보증기간

계약일(변경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변경 또는 추가보증의 경우는 변경계약일을 말함)부 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이나 당해 계약문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.

### (4) 보증수수료

보증수수료는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


※ 보증수수료 할증

특별심사 등급에 따라 산출수수료의 40%까지 할증할 수 있습니다.

※ 보증수수료 할인

조합원 입보 시 산출수수료의 20%가 추가 할인됩니다(단, 낙찰률 69% 미만인 공사는 제외).

[ 보증수수료 할증 ]

нла	EF01				신	용 평 가 등	급				
포 7 월	근귀	AAA	A AA A	AAA AA A		BBB	BB	В	CCC	СС	С
공사이행보증	연%	0.15	0.225	0.325	0.45	0.45	0.475	0.475	0.5	0.5	

#### (5) 연대보증인

기존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개별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약정인의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부가 연대보증하여야 합니다.

### (6) 구비서류

- O 계약서 사본
- O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문 사본 및 공사낙찰확인(원)
- O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시공이행각서(보증서에 보증이행업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)
- O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
- O 기타 보증심사에 필요한 경우

#### (7) 특별심사 기준

#### (가) 심사기준

심사분야	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
		AAA	40
		AA	37
신용도	조합신용평가 결과(40점)	А	34
(40점)		BBB	30
		BB	26
		В	22

심사분야	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			
	고린니으퍼리	CCC	18			
신용노 (40저)	소압신용평가 경고!(40저)	CC	15			
(40-=)	·====(40·=)	С	12			
		77% 이상	35			
		74% 이상 77% 미만	33			
	예정가격대비	71% 이상 74% 미만	31			
	당해공사의 낙찰률	68% 이상 71% 미만	29			
	(35점)	65% 이상 68% 미만	27			
		62% 이상 65% 미만	24			
		60% 이상 62% 미만	21			
게야비유		공동수급인 3인 이상	10			
(50점)		공동수급인 2인	7			
	계약형태 (10점)	단독계약 (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 식에 의한 공동도급 포함)	3			
		국가 · 지방자치단체				
	보증채권자 유형(5점)	출연 · 출자기관 등 정부산하기관	4			
		기타 공공기관	3			
		1등급	10			
		2등급	9			
안정성	안정성	3등급	8			
(10점)	등급(10점)	4등급	7			
		5등급				
		6등급 이하	5			
가·감점		지점장 평가	±5			
총 계			100점			

#### (나) 보증채권자 유형 구분

- 정부출연·출자기관 등 정부산하기관 :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(공공기관)에 해당되는 기 관 또는 단체
- 기타 공공기관 : 상기 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 이외에 국가계약법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공의 성격을 띤 기관 또는 단체

※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인정

(다) 안정성 등급(10점)

안정성 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 이하
점수	10	9	8	7	6	5

◆ 안정성등급 산출방법

출자등급	3	1				1					1									(	3					۷	ļ					Ę	5		
시공능i 등 급	력	1	2	3	4	5	6	1	2	3	4	5	6	1	2	3	4	5	6	1	2	3	4	5	6	1	2	3	4	5	6				
	AAA	1	1	1	1	1	1	1	1	1	1	1	2	1	1	1	1	2	2	1	1	1	2	2	2	1	1	2	2	2	3				
	AA	1	1	1	2	2	2	1	1	2	2	2	3	1	2	2	2	3	3	1	2	2	3	3	3	2	2	3	3	3	4				
신	А	1	2	2	2	3	3	2	2	3	3	3	3	2	2	3	3	3	4	2	3	3	4	4	4	2	3	4	4	4	5				
명	BBB	2	3	3	3	4	4	2	3	4	4	4	5	3	3	4	4	5	5	3	4	4	5	5	6	3	4	5	5	6	6				
평 가	BB	2	3	4	4	4	5	3	4	4	5	5	5	3	4	5	5	5	6	4	5	5	6	6	7	4	5	6	6	7	7				
등	В	3	4	4	5	5	5	3	4	5	5	6	6	4	5	5	6	6	7	4	5	6	7	7	8	5	6	7	7	8	8				
급	CCC	3	4	5	5	6	6	4	5	6	6	7	7	4	5	6	7	7	8	5	6	7	8	8	9	5	7	8	8	9	9				
	CC	4	5	5	6	7	7	4	6	7	7	8	8	5	6	7	8	8	9	5	7	8	8	9	9	6	8	9	9	10	10				
	С	4	5	6	7	7	8	5	6	7	8	8	9	5	7	8	8	9	9	6	7	8	9	9	10	7	8	9	10	10	10				

주) 조합원의 안정성등급은 출자·시공능력등급의 열과 신용평가등급의 행이 교차하는 칸의 숫자로 한다.

#### ◆ 특별심사 등급별 할증수수료 및 담보징구 범위

심사등급	평점구간	보증수수료 할증	담보징구 범위
1~5등급	70점 이상	면제	면제
6등급	65점 이상 70점 미만	산출수수료의 10%	보증금액의 2%
7등급	60점 이상 65점 미만	산출수수료의 20%	보증금액의 6%
8등급	55점 이상 60점 미만	산출수수료의 30%	보증금액의 10%
9등급	55점 미만	산출수수료의 40%	보증금액의 14%

※ 담보제공 대신 조합원 입보로 대체 가능(수수료 할증기준은 동일)

#### (1) 출자등급

등급	출자좌수 구간값
1	1,000좌 이상
2	500좌 이상 1,000좌 미만
3	300좌 이상 500좌 미만
4	100좌 이상 300좌 미만
5	100좌 미만

(2) 시공능력등급

등 급	시공능력 구간 값
1	500억 이상
2	100억 이상 500억 미만
3	50억 이상 100억 미만
4	30억 이상 50억 미만

등급	시공능력 구간 값
5	10억 이상 30억 미만
6	10억 미만

 주) "시공능력"은 관련 법령에 의한 시공능력 공시금액
 (공시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말한다)으로서 당해 공사의 업종별 시공능력금액으로 한다.

(3) 신용평가등급 : 조합원별로 부여받은 조합의 신용등급

#### (라) 가·감점(±5점): 지점장 평가

아과도한 시공능력평가금액 이상의 공사 등에
 따른 조합채권 침해의 우려 유무 : ±2점

○ 관리능력과 동업계 세평 및 사업전망 : ±3점 👤

# 인증서갱신 이용안내

# 가. 인증서갱신이란?

설비조합 온라인지점을 이용하기 위해 타기관 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 니다. 따라서 사용하시던 인증서가 만료되어 재발 급 받은 경우 또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 우 이 인증서를 설비조합에 등록해야 합니다.

# 나. 갱신방법

설비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증서갱신을 클릭하거나 온라인지점에서 타기관인증서를 클 릭하시면 됩니다.

1) 인증서 갱신 선택

① 홈페이지에서 "인증서 갱신"을 클릭



② 온라인지점에서 "인증서등록"을 클릭



2) 타기관인증서를 등록하는 화면



3)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
 시오. (혹,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인증
 서를 발급 받았다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십시오)

4) 다음과 같이 설
 치되어 있는 인
 증서가 나타납니
 다.

5) 등록할 인증서 를 선택하신 후 비밀번호를 입



조합 안내

력하면 정상적으로 갱신이 완료됩니다. 갱신 완료 후 온라인지점이 종료되며 온라인 지점 재접속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# 다. 참고사항

※ 여러 개의 인증서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등 록하여야 하며, 이후 온라인지점 이용 시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.